

# 도서관규정 시행세칙

- 제정 : 1995. 6. 20
- 개정 : 2000. 4. 19
- 개정 : 2010. 3. 1
- 개정 : 2016. 3. 9
- 개정 : 2017. 8. 31
- 개정 : 2019. 3. 1
- 개정 : 2019. 6. 18

**제1조(목적)** 이 세칙은 도서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연체료 징수)** ① 대출된 도서에 대한 연체료는 1책당 1일 50원으로 한다.

② 연체료는 전액 교비로 입금한다.

**제3조(정리비 징수)** 도서관 자료의 변상에 있어서 실물이나 대금변상을 막론하고 해당 도서가격의 10%를 정리에 소요되는 정리비로 징수한다.

**제4조(기증, 기탁자료의 처리 및 관리)** 기증 및 기탁 자료는 기증 및 기탁자(처)의 희망에 따라 그 성의에 대한 보답으로 도서관장은 아래 사항을 총장에게 품신할 수 있다. 다만, 기증 및 기탁 자료가 문고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명패 게시
2. 감사패 증정
3. 기념문고 설치

**제5조(학생증 및 대출증)** ① 학생증 및 대출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, 또한 타인의 학생증 또는 대출증으로 자료를 대출 받을 수 없다.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양쪽 모두 1개월간 열람 및 대출이 금지 된다.

② 학생증 및 대출증을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.

③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고 학생복지과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.

**제6조(업무)** 도서관 각 과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사서과
  - 1) 도서관장 직인관리

#### 7-1-5 도서관규정 시행세칙

- 2) 문서수발, 정리 및 보관 업무
- 3) 장서통계 업무
- 4) 자료 수·기증
- 5) 자료선정 및 구입 업무
- 6) 자료정리 업무
- 7) 장서관리
- 8) 서지작성
- 9) 도서관 전산 관리 업무
- 10) 등록원부 관리업무
- 11) 도서관운영위원회
- 12) 도서관 발전계획
- 13) 대학 기록관리

#### 2. 열람과

- 1) 도서대출 및 반납 업무
- 2) 이용통계 업무
- 3) 연체 관리업무
- 4) 자료의 열람, 관리 및 보존 업무
- 5) 정기간행물실 운영
- 6) 참고열람실 운영
- 7) 부속시설 운영
- 8) 참고봉사 업무
- 9) 이용자 교육 및 홍보업무
- 10) 기타 관내 서무에 관한 사항

**제7조(부속시설 운영)** ① 도서관은 다음과 같이 부속시설을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

1. 멀티미디어라운지, A/V코너, 랭귀지랩실, 스터디룸 : 09:00 - 17:00(방학기간, 공휴일 제외)
2. 시네마룸 : 별도 정함
3. 휴게실 : 도서관 운영시간에 준함

② 도서관장은 필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**제8조(발전계획의 수립)** 도서관은 발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#### ① 발전계획

1.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

2. 도서관 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
3.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
4.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
5. 도서관 인적 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
6.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연도별 계획

1.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
2. 해당 연도의 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
3. 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
4.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사서) 사서의 배치기준과 교육·훈련 시간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사서는 최소 2명이상 배치하도록 한다.
- ② 사서의 교육·훈련시간은 연간 27시간 이상으로 한다.

제10조(도서관 시설 및 자료) 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도서관의 연면적은 재학생 1인당 1.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. 다만,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·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② 도서관의 자료기준은 최소 기본도서 수는 학생 1명당 30권 이상이어야 하며, 최소 연간 증가 책 수는 학생 1명당 1권 이상이어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199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0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7-1-5 도서관규정 시행세칙

부 칙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개정 시행세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사항은 이 시행세칙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